의안번호	제 18 호
의 결	년 월 일
연 월 일	(제 회)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지사
제출연월일	2014년 9월 5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 18 제출연월일: 2014년 9월 5일 제 출 자: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고,
-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 (안 제4조)
 -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,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
- 일자리 창출 사업 (안 제5조)
 -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,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,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
- 취업지원 사업 (안 제6조)
 - 구인·구직 취업서비스 제공,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 등
-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(안 제7조)
 -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설치
 - 취업상담 및 알선,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관리 등 기능 수행
-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(안 제8조)
 -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
 - 인증서 교부 및 「충청북도 기업 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우대

- 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 (안 제9조)
 - 중앙행정기관, 시·군,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와 협력 및 협약 체결 등
- 사무의 위탁 (안 제10조)
 - 효율적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무 위탁 가능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(안 제11조)
 - 일자리 사업 수행·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·단체에 대한 지원
- 포상 (안 제12조)
 -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, 기관·단체 등 포상
- 3. 의안전문 : 붙임
- 4. 신ㆍ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- 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- 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"일자리 창출"이란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.
- 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,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·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의 수립)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
 - 2.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 - 3.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4.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
 - 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일자리 창출 사업)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여성, 노인, 장애인,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
 - 2. 청년층 등 생산적·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
 - 3.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
 - 4.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취업지원 사업) 도지사는 미취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·구직 취업서비스 제공
 - 2. 산학관 협력을 통한 기업수요 맞춤형 취업지원
 - 3. 기업현장 탐방 등 중소기업 정보제공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
 - 4. 그 밖에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- 제7조(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)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에 일자리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둔다. 다만,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을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일자리지원센터는 센터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- ③ 일자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 - 1. 취업상담 및 알선
 - 2. 일자리 사업 지원 및 홍보
 - 3.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·관리
 - 4.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
 - 5.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- 제8조(고용우수기업 인증제)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의 인증제 시행기준 등에 관하여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·공고하고 소정의 선정 절차를 거쳐 인증한다.
 - ③ 인증된 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「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」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.
- 제9조(기관·단체와의 협력 등)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(그 소속·산하기관을 포함한다.), 시·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·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- 제10조(사무의 위탁)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」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) ① 도지사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 - ③ 도지사가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나 단체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한다.

제12조(포상)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·단 체 등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예우 및 지원대상) ①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이나 기업인 (이하 "우수기업인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- 2. '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'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
- 3. '품질경영우수기업'으로 지정된 우수기업인
- 4. 정부에서 무역의 날이나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 한 우수기업인
- 5.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선정 충북우수중소기업인상을 수상한 우수기업인
- 6. 기타 신기술개발, 고용증대, 품질경영 향상, 노사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

제5조(예우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
- 2. 해외시장개척단 파견, 해외전시회 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
- 3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·검사권을 유예한다. 다만,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.
- 4. 도 주요행사 초청 우선 지원
- 5.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
- 6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・재정적 지원
-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.

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 수행
- 취업상담・알선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
-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시행을 위한 홍보비 및 인증서 제작비

3. 관련조문 : 안 제5조 ~ 제8조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-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
 - 2030 잡 매칭 프로그램('07),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('10) 대학-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('13)
 -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및 일자리 행사 추진('10)
 - 직업상담사 인건비, 구인·구직 알선, 일자리발굴단 운영 취업캠프, JOB콘서트, 구직자 교육, 만남의 날, 진로체험 등
 - 고용우수기업 인증제('10)
 - 기업체 홍보를 위한 리플릿 및 인증서 제작 비용

나. 추계 결과 ('14 ~ '18) : 5,883,000천원(도비)

○ 대학-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: 1,918,000천원(도비)

○ 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 : 2,180,000천원(도비)

○ 2030 잡 매칭 프로그램 : 510,000천원(도비)

○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: 1,250,000천원(도비)

○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: 25,000천원(도비)

다. 재원조달 방안 : 도비 100%

※ 매년 도비 확보하여 운영 중 ('14년 예산 기확보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'14년)	2차년도 ('15년)	3차년도 ('16년)	4차년도 ('17년)	5차년도 ('18년)	계
계	1,176,600	1,176,600	1,176,600	1,176,600	1,176,600	5,883,000
대학-기업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	383,600	383,600	383,600	383,600	383,600	1,918,000
고용우수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	436,000	436,000	436,000	436,000	436,000	2,180,000
2030 잡 매칭 프로그램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102,000	510,000
일자리지원센터운영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250,000	1,250,000
고용우수기업 인증제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25,000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일자리창출과장 장화진